

## 사채권자집회 결의

2017년 10월 20일 연회된 웅진에너지 주식회사의 제 2회 무보증 변동금리부 외화사채의 사채권자집회가 2017년 11월 2일 개최되어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음을 안내합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17년 11월 2일(木) 오전 10:00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 종로플레이스 14층 대회의실
3. 회의 결의사항

의안	제 2회(무보증 변동금리부 외화사채)
제 1호 의안 (결의사항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웅진에너지(주) 제 2회 무보증 변동금리부 외화사채 (이하 “본건 사채”)에 관한 사채권자 집회 (이하 “본건 사채권자집회”) 결의일로부터 그 효력 발생일 까지의 사이에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을 취소하고, 기한이익상실 취소통지의 권한을 수탁 회사인 엔에이치 투자 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.</li> <li>2. 본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일로부터 그 효력 발생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 원인 사유는 발생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,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통지의 권한을 수탁 회사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.</li> <li>3.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아래 각항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출자전환 또는 전환사채 차환발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본건 사채의 만기 이전에라도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또는 전환 사채의 발행으로 변제에 갈음 하는 방식으로 본 건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한다.</li> <li>4.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법원인가 결정 등으로 확정되는 날부터 사채등록필증 원본 및 발행회사가 요구하는 신청 서류를 발행 회사에 제출 하는 방법으로, 보유하는 사채총액의 100%를 발행회사 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하여 출자 전환 대상사채 원리금을 신주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.</li> <li>5. 제 4 항에 따른 신주의 발행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르되, 신주의 발행가액의 경우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청약일 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 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%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한다.</li> <li>6.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법원인가 결정 등으로 확정 되는 날부터 사채등록 필증 원본 및 발행회사가 요구하는 신청서류를</li> </ol>

	<p>발행회사에 제출 하는 방법으로, 보유하는 사채 총액의 100%를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.</p> <p>7. 제 6 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.</p> <p>① 전환가액: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-22 조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의 90%</p> <p>② 전환가액 조정사유: 시가 미만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, 현금배당, 시가변동(발행 당시 전환가액 의 70% 한도로 하향조정 가능) 등</p> <p>③ 전환사채의 만기일: 2020 년 12 월 19 일</p> <p>④ 전환사채의 이율: 표면이자율은 연 3%로 하고, 만기보장수익률은 표면이자율인 3%를 포함하여 분기단위 연 복리 4%로 한다. (만기상환: 만기시 지급하는 원금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잔액의 103.1706%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.)</p> <p>⑤ 전환기간: 발행일 1 년 이후부터 2020 년 11 월 19 일 까지</p> <p>⑥ 조기상환청구권: 사채권자에게 발행일로부터 24 개월 이후인 2019 년 12 월 19 일 및 이후 매 3 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한다.</p> <p>⑦ 기타 사채조건 및 청약방법, 필요서류: 발행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</p> <p>8. 발행회사가 상기 신주 발행 및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하는 경우 본건 사채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일부부터 이자(연체이자 포함)가 발생 하지 아니하며, 본건 사채의 만기는 사채권자가 제 4 항 또는 제 6 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까지 연장된다. 단, 사채권자가 제 4 항 또는 제 6 항의 권리를 행사할 경우 발행회사는 이사회 결의일부부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의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.</p>
--	---

기타 사채권자집회 관련 문의사항은 웅진에너지 주식회사 자금&IR 팀(042-939-8033,8034) 또는 수탁회사(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02-768-7323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11월 2일

**웅진에너지 주식회사**

대표이사 신 광 수